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37
----------	-----

2025. 1. 24.(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조성태 의원 등 8인
- 나. 발의일자 : 2025년 1월 10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 라. 상정일자 : 2025년 1월 21일
 -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성태 의원)

가. 제안사유

- 최근 건축물의 해체공사 과정에서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현실임.
- 이에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관리 등(안 제4조)

-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전교육(안 제5조)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전조치 등(안 제6조)

-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관계기관 협력 등(안 제7조)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

하여 배포할 수 있고, 해체공사시공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체공사관계자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작업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는 해체공사 중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을 발견한 경우 도지사에게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를 조례에 담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목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건축물 해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의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점과 상위법에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조치에 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군과 충분한 협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시공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 ①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기술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